

산재보험 실태 조사와 불이익사례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인정 현황

2024년 1분기

업무상 질병 업종 판정 현황

구분	판정	업종별 구성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상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 사업	금융·보험업
전체	5,280	4.1	32.3	0.1	25.9	5.7	0.3	0.1	0.2	30.4	0.7
서울남부	633	3.8	22.9	0.5	25.4	5.2	0.0	0.0	0.2	40.9	1.1
서울북부	648	12.7	12.8	0.0	31.9	6.2	0.8	0.0	0.2	34.4	0.9
부산	635	0.0	43.8	0.0	20.5	6.9	0.0	0.0	0.2	27.6	0.6
경남	392	0.0	63.0	0.3	11.2	2.3	0.5	0.3	0.0	21.7	0.0
대구	332	6.3	37.3	0.0	19.0	7.8	0.9	0.0	0.6	26.8	0.6
경인	1,168	0.0	28.4	0.0	30.4	7.7	0.0	0.0	0.2	32.8	0.4
광주	729	11.4	28.7	0.0	28.4	4.4	0.4	0.3	0.5	24.8	1.1
대전	743	0.9	38.8	0.4	26.9	3.8	0.1	0.0	0.3	28.4	0.4

질환별 업종 현황

구분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제조업			기타의 사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		
	'231분기	'241분기	증감	'231분기	'241분기	증감	'231분기	'241분기	증감	'231분기	'241분기	증감
계	23.0	24.2	1.2	46.9	50.2	3.3	41.8	32.6	△9.2	31.4	28.0	△3.4
서울남부	0.0	10.7	10.7	68.9	71.4	2.5	4.9	1.5	△3.4	64.3	52.1	△12.2
서울북부	6.4	10.8	4.4	55.1	61.5	6.4	19.4	13.7	△5.7	39.4	33.1	△6.3
부산	34.1	29.3	△4.8	34.1	37.9	3.8	55.6	43.8	△11.8	25.4	26.3	0.9
경남	40.6	43.8	3.2	37.5	40.6	3.1	68.9	64.8	△4.1	21.3	20.1	△1.2
대구	32.4	36.1	3.7	32.4	30.6	△1.8	33.5	34.0	0.5	35.6	30.7	△4.9
경인	27.4	28.0	0.6	46.6	48.2	1.6	35.8	28.7	△7.1	33.4	28.3	△5.1
광주	21.9	15.9	△6.0	46.9	54.5	7.6	49.3	29.7	△19.6	21.7	22.3	0.6
대전	30.8	24.0	△6.8	42.3	49.3	7.0	45.1	40.2	△4.9	31.9	26.2	△5.7

업무상질병 심의 소요 기간

(단위: 리)

구분	계		서울남부			서울북부	부산	경남	대구	경인	광주	대전
	전체	통합 제외	전체	통합 심의	통합 제외							
2023.1분기	20.7	20.6	23.1	22.3	23.6	21.2	27.5	18.8	14.7	22.2	12.0	22.6
2024.1분기	21.1	20.9	22.0	25.3	18.9	24.8	23.7	15.4	32.5	20.3	15.3	20.0
증 감	0.4	0.3	△1.1	3.0	△4.7	3.6	△3.8	△3.4	17.8	△1.9	3.3	△2.6

경남지역 업무상 질병 인정 현황

(단위: 건, %)

구분	접수	처리	판정				인정률	회송
			소계	인정	일부인정	불인정		
계	5,613	5,454	5,280	2,192	854	2,234	57.7	117
서울남부	671	672	633	325	61	247	61.0	25
서울북부	775	676	648	321	145	182	71.9	11
부산	679	654	635	183	137	315	50.4	14
경남	419	402	392	138	72	182	53.6	8
대구	418	342	332	142	39	151	54.5	8
경인	1,195	1,208	1,168	469	144	555	52.5	28
광주	756	739	729	302	145	282	61.3	10
대전	700	761	743	312	111	320	56.9	13

전년 동기 비교

(단위: 건, %, %p)

구분	2023년 1분기			2024년 1분기			증감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계	4,363	2,662	61.0	5,280	3,046	57.7	917	384	△3.3
서울남부	477	306	64.2	633	386	61.0	156	80	△3.2
서울북부	545	408	74.9	648	466	71.9	103	58	△3.0
부산	523	333	63.7	635	320	50.4	112	△13	△13.3
경남	404	241	59.7	392	210	53.6	△12	△31	△6.1
대구	324	196	60.5	332	181	54.5	8	△15	△6.0
경인	1,011	562	55.6	1,168	613	52.5	157	51	△3.1
광주	559	292	52.2	729	447	61.3	170	155	9.1
대전	520	324	62.3	743	423	56.9	223	99	△5.4

구체적인 인정율

(단위: 건, %, %p)

지역	구분	전체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기타질병		
		관정	인정	인정률	관정	인정	인정률	관정	인정	인정률	관정	인정	인정률
전체	2023.1분기	4,363	2,662	61.0	495	167	33.7	3,148	2,077	66.0	720	418	58.1
	2024.1분기	5,280	3,046	57.7	530	161	30.4	3,899	2,450	62.8	851	435	51.1
	증 감	917	384	△3.3	35	△6	△3.3	751	373	△3.2	131	17	△7.0
서울부	2023.1분기	477	306	64.2	45	22	48.9	143	101	70.6	289	183	63.3
	2024.1분기	633	386	61.0	56	27	48.2	194	133	68.6	383	226	59.0
	증 감	156	80	△3.2	11	5	△0.7	51	32	△2.0	94	43	△4.3
서울북부	2023.1분기	545	408	74.9	78	38	48.7	350	272	77.7	117	98	83.8
	2024.1분기	648	466	71.9	65	21	32.3	489	374	76.5	94	71	75.5
	증감	103	58	△3.0	△13	△17	△16.4	139	102	△1.2	△23	△27	△8.3
부산	2023.1분기	523	333	63.7	41	15	36.6	410	283	69.0	72	35	48.6
	2024.1분기	635	320	50.4	58	16	27.6	482	275	57.1	95	29	30.5
	증 감	112	△13	△13.3	17	1	△9.0	72	△8	△11.9	23	△6	△18.1
경남	2023.1분기	404	241	59.7	32	10	31.3	347	224	64.6	25	7	28.0
	2024.1분기	392	210	53.6	32	7	21.9	324	186	57.4	36	17	47.2
	증 감	△12	△31	△6.1	0	△3	△9.4	△23	△38	△7.2	11	10	19.2
대구	2023.1분기	324	196	60.5	37	11	29.7	236	159	67.4	51	26	51.0
	2024.1분기	332	181	54.5	36	15	41.7	241	145	60.2	55	21	38.2
	증 감	8	△15	△6.0	△1	4	12.0	5	△14	△7.2	4	△5	△12.8
경인	2023.1분기	1,011	562	55.6	146	48	32.9	784	483	61.6	81	31	38.3
	2024.1분기	1,168	613	52.5	164	47	28.7	922	532	57.7	82	34	41.5
	증 감	157	51	△3.1	18	△1	△4.2	138	49	△3.9	1	3	3.2
광주	2023.1분기	559	292	52.2	64	8	12.5	446	266	59.6	49	18	36.7
	2024.1분기	729	447	61.3	44	9	20.5	640	425	66.4	45	13	28.9
	증감	170	155	9.1	△20	1	8.0	194	159	6.8	△4	△5	△7.8
대전	2023.1분기	520	324	62.3	52	15	28.8	432	289	66.9	36	20	55.6
	2024.1분기	743	423	56.9	75	19	25.3	607	380	62.6	61	24	39.3
	증 감	223	99	△5.4	23	4	△3.5	175	91	△4.3	25	4	△16.3

설문 조사 결과

부울경 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 배경

2023년 11월 국민의 힘 의원이 국정 감사 : 산재카르텔/나이롱환자
산재보험 누수

고용노동부 대대적인 감사 투입 : 사실 확인 없음. 나이롱 환자 아님을 확인

감사 결과 : 2017년 평균 149.2일에서 2023년에 214.5일 증가,

역학조사 2017년에는 178.4일에서 2023년 634.6일 증가

부정 수급이라고 밝힌 비율은 최초요양을 기준으로 0.02%~0.05%로, 99.998%는 문제

하지만, 부정수급 만연, 추정의 원칙 관련 법적 근거 미비, 소음성난청에 대한 불합리한 보상, 표준요양기간 부재로 치료 종결일 기준 부재 등의 미흡 사항이 확인하였다며 산재보험을 개약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조사 목적 및 방법

목적 :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산재보험의 실태와 개선과제를 확인하고자 함.

방법 : 설문 조사 온-오프라인 병행 .

사업장 규모, 노조 유무, 산재보험 운영에 대한 생각, 윤석열 정부의 산재 노동자에 대해 산재 카르텔 및 나이롱 환자에 대한 생각, 산재 보험 제도 개선 방향, 산재 경험, 산재 경험 후 치료 방법, 산재보험 치료 하지 않은 이유, 산재 보험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

조사 기간 : 2024년 3월 27일부터 5월 16일,

설문 조사 분석 : SAS 9.4를 이용해 빈도분석, 교차 분석 등 통계적 차이 확인

조사 주체 : 「윤석열정부 산재보험 제도 개악 대응 함께」

((사)김용균재단,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법률원,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노총경남본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전국금속 노동조합,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사 결과

	빈도	퍼센트
경남	1461	68.6
울산	643	30.2
부산	25	1.2
총	2,129	100

표 1 설문 참여자 지역별 정보

	빈도	퍼센트
50인 미만	386	18.1
50인 이상~300인 미만	690	32.4
300인 이상	1,053	49.5
총	2,129	100

표 2 설문 참여자 규모별 응답자

산재보험 운영에 대한 평가

	빈도	퍼센트
그렇다	683	32.08
아니다	762	35.79
모르겠다.	684	32.13
총	2,129	100

표 3 산재보험 운영에 대한 평가

	빈도	순위
산재 신청이 어렵고 복잡해서	374	1
산재 결정 기간이 오래 걸려서	267	3
산재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302	2
산재 치료 기간이 짧아서	139	4
산재 보상이 적어서	84	5

표 4 산재보험 운영이 부정적인 이유

산재보험 운영 (규모와 노조)

	그렇다	아니다	<u>모르겠다</u>	p-value
50인 미만	110 28.50	117 30.31	159 41.19	<.0001
50인 이상~300인 미만	264 38.26	209 30.29	217 31.45	
300인 이상	309 29.34	436 41.41	308 29.25	

표 5 산재보험 운영에 대한 생각(규모별)

	그렇다	아니다	<u>모르겠다</u>	p-value
노조 있음	661 32.84	702 34.87	650 32.29	0.0004
노조 없음	22 18.97	60 51.72	34 29.31	

표 6 산재보험 운영에 대한 생각(노조 유무)

산재 카르텔, 나이롱 환자에 대한 생각

	빈도	퍼센트
산재노동자들을 비난하며 보호와 권리를 축소하려는 의도이다.	1739	81.68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보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165	7.75
잘 모르겠다.	225	10.57

표 7. 산재 카르텔, 나이롱 환자에 대한 생각

산재보험 개혁 방향

	빈도	순위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 보험 적용	829	2순위
산재 인정 기준 확대	1011	1순위
산재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	723	3순위
산재 보상 범위 확대	672	4순위
선 보장 후 평가	638	5순위
산재 증명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	246	6순위

표 8 산재보험 개혁 방향

	산재 치료	산재 미치료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 보험 적용	132	697
산재 인정 기준 확대	169	842
산재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	133	589
산재 보상 범위 확대	99	574
선 보장 후 평가	69	569
산재 증명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	32	214

표 10 산재보험 개혁 방향(산재 치료 경험 유무)

산재 경험과 처리

	빈도	백분율
산재보험	325	32.76
공상 처리	149	15.02
자비 부담	479	48.29
치료받지 못함	39	3.93

표 12 산재 경험 후 치료 방법

	빈도	백분율
경험이 있다	992	46.59
경험이 없다	1137	53.41

표 11 산업재해 경험

산재 경험과 처리(규모와 노조)

	산재보 험	공상 처리	자비 부담	치료받 지 못함	p-value
50인 미만	41 25.15	18 11.04	99 60.74	5 3.07	<.0001
50인 이상~300인 미만	83 28.04	58 19.59	149 50.34	6 2.03	
300인 이상	201 37.71	73 13.70	231 43.34	28 5.25	

표 13 산업재해 경험 후 치료 방법(규모)

	산재보 험	공상 처리	자비 부담	치료받 지 못함	p-value
노조 있음	284 31.00	136 14.85	463 50.55	33 3.60	<.0001
노조 없음	41 53.95	13 17.11	16 21.05	6 7.89	

표 14 산업재해 경험 후 치료 방법(규모)

산재처리를 하지 못한 이유

	빈도	백분율
회사가 산재 신청하는 것을 방해해서	24	3.60
회사가 <u>공상처리</u> 해줘서	45	6.76
산재 신청 시 불이익이 걱정돼서	78	11.71
산재 신청 절차를 잘 모르고 어려워서	98	14.71
<u>경미한</u> 부상이나 질병이라서	408	61.26
특수고용 등 산재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13	1.95

표 15 산재보험으로 치료 받지 않은 이유

	산재신청 방해	<u>공상처리</u>	불이익 걱정	산재신청 절차모름	<u>경미한부</u> 상질병	<u>특고 등</u> <u>산재대상</u> <u>아님</u>
노조 있음	24 3.80	39 6.18	69 10.94	92 14.58	396 62.76	11 1.74
노조 없음	0 0.00	6 17.14	9 25.71	6 17.14	12 34.29	2 5.71

표 16 산재보험으로 치료 받지 않은 이유(노조 유무)

산재과정의 어려움

항목	그렇다	아니다	보통이나 또는 해당없음
산재 신청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다	216 66.46	96 29.54	13 4.00
사업주가 의견서를 늦게 내거나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111 34.15	174 53.54	40 12.31
현장조사와 질병판정위원회 참석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104 32.00	154 47.38	67 20.62
산재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245 75.38	63 19.38	17 5.23
노동자나 주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승인을 당했다	97 29.94	183 56.48	44 13.58
휴업급여가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166 51.08	120 36.92	39 12.00
비급여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다	187 57.54	99 30.46	39 12.00
산재노동자 상태나 주치의 소견에 반해 치료기간이 단축되거나 강제로 치료 종결을 당했다	137 42.15	147 45.23	41 12.62
산재 신청과 회사 복귀 과정에서 회사 압박이나 주변 동료의 눈치로 심리적 위축감을 느꼈다	130 40.00	155 47.69	40 12.31
산재 노동자 의견을 근거없이 불신해 마음이 불편했다	141 43.38	144 44.31	40 12.31
재해자 상태나 주치의 장애진단에 비해 장애등급이 낮았다	117 36.00	88 27.08	120 36.92
장애등급 판정/재판정을 받을 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다	79 24.31	118 36.31	128 39.38
장해보상금이 적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다	95 29.23	103 31.69	127 39.08
장애등급 재판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됐다	62 19.08	118 36.31	145 44.62
장애판정 이후 직장 복귀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71 21.85	132 40.62	122 37.54
공단이 안내 등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101 31.08	146 44.92	78 24.00

불이익 사례

치료 기간 연장 관련

- 재해자는 신경정신관련한 질환으로 치료
- 2024.2.19일 진료계획서 제출(3.1~5.31 치료 연장)
- 2024년 5월 28일 연장 승인
- 2024년 5월 31일 치료 종결

- 문제점

재해자는 연장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계속 요양 치료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 복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즉, 연장이 되지 않으면 3.1.부터 사실상 무단 결근되는 상황.

치료 연장 불승인에 대한 불안감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함!

치료 연장 후 바로 치료 종결 됨. 사실상 3개월의 치료 기간동안 마음편히 요양이 되지 않음.

늑골 골절 사례 경과

사고성 재해로 요양 신청 : 24.03.07(최초일부승인) : (불승인)우측 제9번 늑골골절.
(승인)흉부의 타박상

요양기간 승인 : 24.2.26~24.3.29

• 24.3.13 이의제기(심사청구) 신청 : 24.05.07우측 제9번 늑골골절. 심사청구승인

재해자는 근태, 급여의 압박으로 24.4.19(월) 출근하여 작업 시작. 치료 포기

치료를 포기 후 약 20일 만에 심사청구 승인 결정 통지됨.

늑골 골절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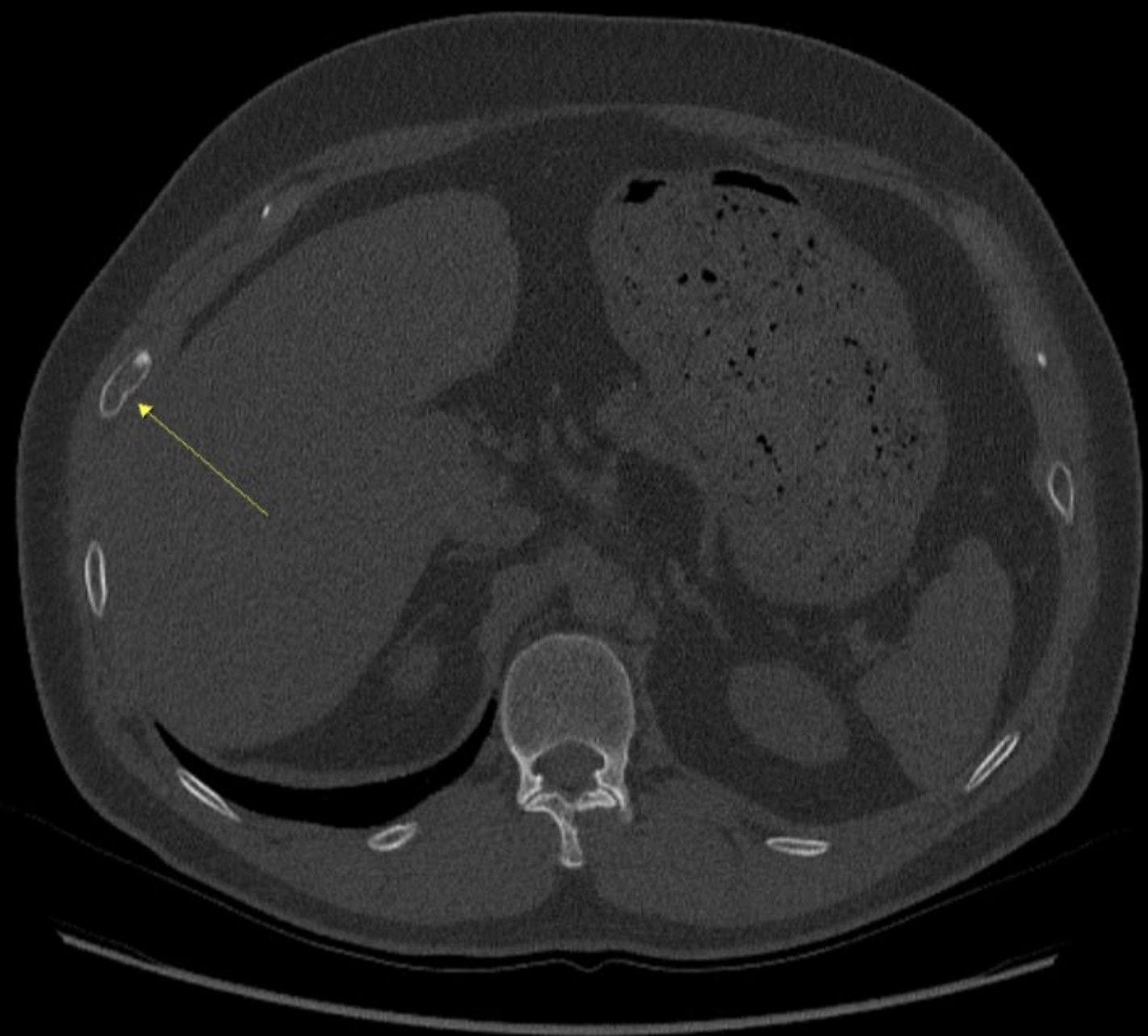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C소) 상기주소로 수상 후 내원하여 늑골 골절 확인됨.
- (자문의사) 영상의학 자료에서 신청상병(우측 9번째 늑골골절) 확인할 수 없음.
재해경위 상 흉부 타박상은 타당함. 이때 요양기간은 통원 5주 타당함.

최종 결정

- '우측 제9번 늑골 골절'은 상병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함.

Revolution HD
Acc:2402280514
Srs:2
Img:247



[L]

Zoom : 188.28%
WL : 500
WW : 1000

20cm

심사 결정서

원처분 결정 취소-승인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제37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그 부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주치의사는 우측 제9번 늑골골절 소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 상병 확인에 대한 재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2024. 2. 23. 발생한 사고로 상병명 ‘우측 제9번 늑골골절, 흉부의 타박상’을 진단받아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제출된 의학 영상자료에서 ‘우측 제9번 늑골골절’ 소견 확인되며 재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됨.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재해와 상병 ‘우측 제9번 늑골골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최초요양 신청 상병인 ‘우측 제9번 늑골골절’은 이 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급성 골수 모구성 백혈병 산재 신청 후 사망 사례

22. 2. 경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 진단

22. 7. 경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

23. 6~7월 현장 역학조사 완료(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연구보고서 작성 중)

입·퇴원을 반복하며 항암치료를 진행 중 24년 1월 4일 별세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로 전달 및 통영지사에서 판정 예정(하반기 예상)

현장 역학조사시 안전보건팀에서 물질관련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거부

몇 가지 더..

재해자는 작업 중 발목을 다치는 사고 발생. 산재 처리 기간이 늦어짐. 산재 일부 승인되었으나 치료 기간이 산재 처리 기간 중간으로 제한 됨.

급식 노동자 : 폐암으로 산재 인정 받았으나, 근무를 하면서 치료 하라며 휴업급여 미지급

2024년 초 무릎 인대파열 후 산재 신청하였으나 2월 20일 특진 넘겨졌으나 확인 결과 10월~11월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이후에 질판위에 넘겨 질 예정으로 확인 됨.

노동자 목소리

- 신청부터 증명까지 노동자들이 다해야하는 어려운 산재를 바꿉시다
- 산재보험 신청시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여부를 산재 신청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야한다고 봅니다~
- 산재승인여부를 빨리 처리하여야합니다
- 질병 심사기간이 너무길
-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호하기
- 산재 인정범위를 넓혀주세요
- 노동자는 당신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마세요
- 근골격계에있어서 승인 나는경우가 너무힘드는데 일을하다보면 근골격계가 스트레스가 누적되서 발생되는데 그것을 증명하여도 산재승인 나기힘드게 현실입니다.개선이 필요합니다.
- 산재결과가 너무 늦어 불편합니다...빠르게 일처리했음합니다~
- 산재 승인을 확대와 충분한 요양기간 부여.

- 근로자가 피해보지않게 관리부탁드립니다
- 회사내 산재 노동자의 부당한 대우
- 휴업급여를 70%가아닌 90%인상하여 산재치료로인한 손해를 보지않게 하여야한다고생각하며 아직도 산재를 은폐하려고하는사업장에 경고조치가아닌더강력한 조치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작업을 평가해서 틀이 아니 현장성에 맞게 평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정말로 궁금하다
- 산재보험은 노동자보호를 위한 취지로 운영되어야합니다
-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정부정책에 의거하여 산재보험 처리가 변경되거나 달라질 경우 하소연할때도 없고 최소한의 휴업보상으로 받는 처우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개악하려고 하는것은 억울하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신속한 처리로 빠른승인 그리고 조금더 나은 휴업수당지급으로 생계때문에 부상과질병으로 산재신청조차 하지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않고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바라봅니다
- 엑스레이와 MRI에 뼈가 부러져있는게 보여도 멍이 없으면 골절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결정은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어떤 근거로 내리는지 궁금하네요!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과제

윤석열정부의 산재보험 개악 대응 함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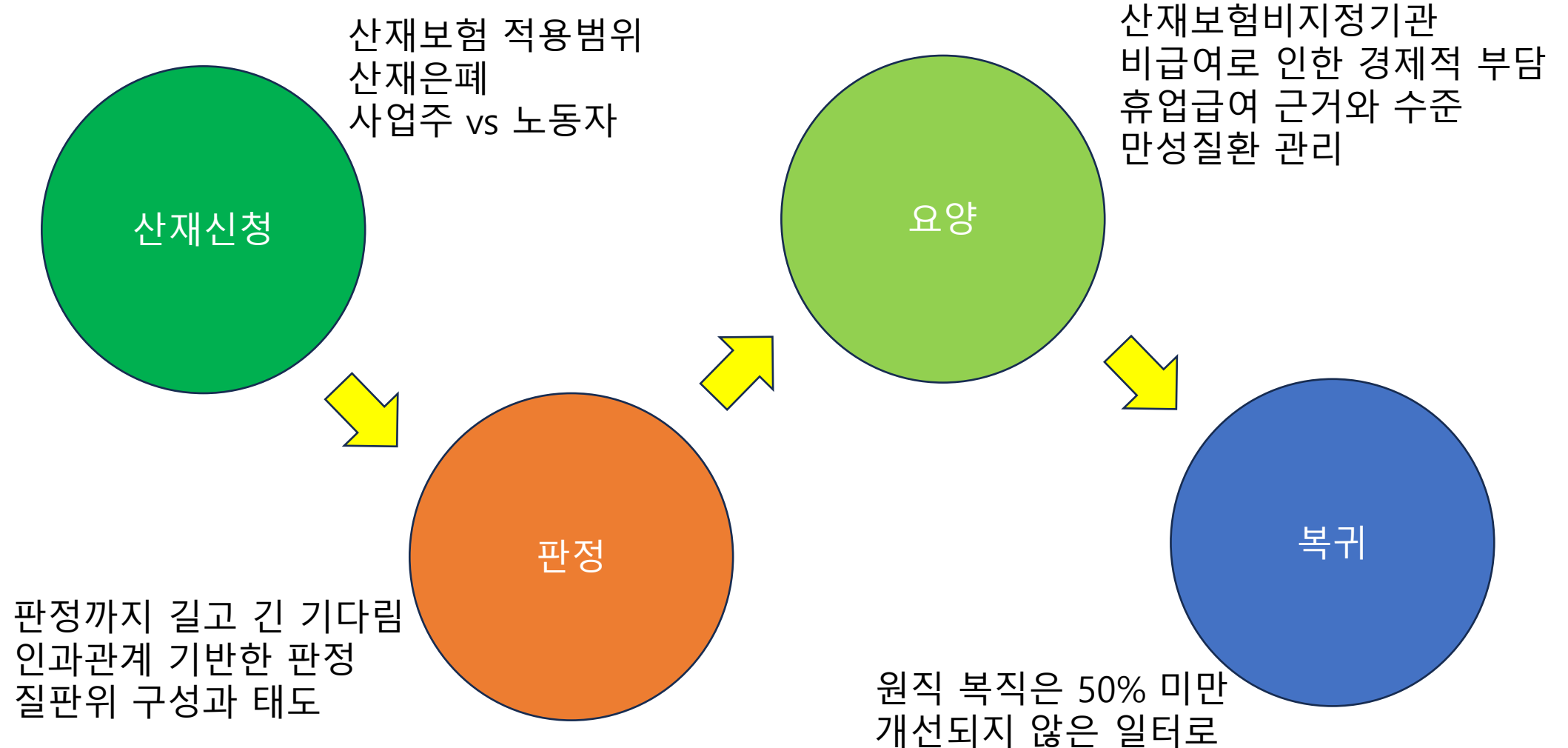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
- 산재보험(법)의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



- 1960년 군부 쿠데타 세력 :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군사정권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 1964년 제정 산재보상보험법
 - 11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휴업 급여 : 평균 임금의 60%
 - 산재보험 대상 사업장은 5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광업과 제조업
 - 64개 사업장의 8만여 명
- 노동자 권리 보장 < 시혜성 행정
- 아래로부터의 힘 < 위로로부터의 선심성 행정

권리 보장 중심의 산재보험으로



산재신청

- 적용 대상 확대
 -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노동자 5인 미만인 경우
 - 가사사용인
 - 특수고용노동자 : 일부 직종 방식이 아니라, 정의 규정을 두어 일하는 사람 전체로 확대.
- 사업주 반복적 의견 제출 제한, 질병판정위원회 사업주 의견 진술 보장 금지
- 여전히 '몰라서' 못하는 노동자들 → 쉽게 할 수 있도록
 - 병원 의사가 산재 절차 개시
 - 국선 노무사 제도?
- 알아도 못 쓰는 노동자들 → 산재 은폐 관리, 감독, 처벌 강화



판정

- 신속성 제고를 위한 과제
 - 추정의 원칙을 대폭 확대 → 해당될 경우 질병판정위원회 거치지 않는 승인. 업종/직종/경력에 기반한 자동 승인. 특히 근로격계질환.
 - 역학조사, 특별진찰 등으로 조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산재보험 급여 선지급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대로 둘 것인가?
 - 전문가 중심 구조. 노동자 경험은 어떻게 반영?
 - 권위적인 태도, '심사'하는 태도. '아픈 사람을 안 아픈 사람 취급하는 것이 불쾌하다'
 - 모든(대부분의) 업무상질병을 개별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나?



요양

- 충분히 실 권리를 보장하라
 - 요양기간 단축이 목표가 아니라, 제대로 치료받는 게 목표
 - 휴업급여 지급 기준 정비 → 불가능한 복귀 종용 중단
 - 중대하고 심각한 질병/ 사고만 산재 신청 → 요양기간 증가
 - 산재 문턱을 낮추고, 유급병가 제도 등 필요.
- 제대로 실 권리를 보장하라
 - 여전히 높은 비급여 문제 → 전면 급여화
 - 휴업급여 수준 높이기 : 80% 이상
- 산재 의료기관
 - 의료기관 변경 권리 제대로 보장
 - 산재의료기관 수를 늘리고 의료의 질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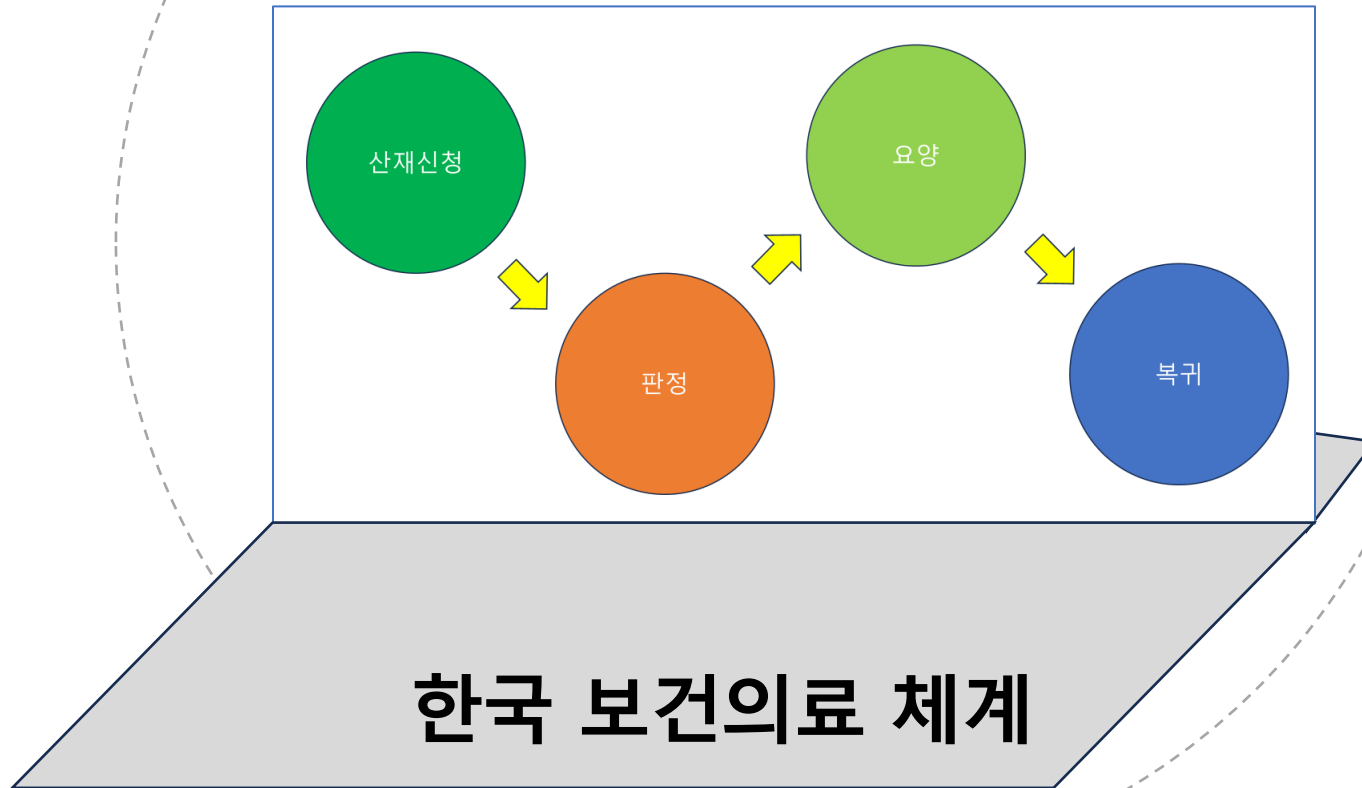
복귀

- 원직장 복귀를 분명한 목표로
 - 재해자의 복귀 뿐 아니라 작업장의 변화도 필요 : 할 수 있는 일, 관찮은 일 제공
 - 산재 발생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 병과 부상을 만든 곳으로 복귀

← 산재은폐 관리, 감독, 처벌과 함께 가야

- 산재 노동자 불이익 금지 조항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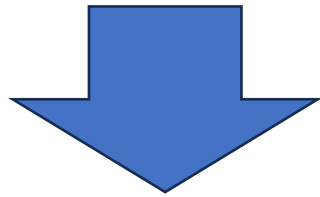
아프면 실 권리





• 업무상원인에 의한 노동불가인지
• 업무외원인에 의한 노동불가인지
구별이 가능한가? 필요한가?

업무 때문에 아프니 보상하라!



일하다 아프니 소득과 고용을 보장하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병가 보장
상병수당 전면화**

한국 보건 의료 체계

- 아프지 않은 광산 퇴직자에게 근골격계 산재를 제안하는 노무사와 전신 MRI 찍고 진단서 주는 의사는?
- 진단 받아 수술하고 산재 냈는데 상병이 안 보인다고?
- 재활 치료 제대로 해주는 의원은 어디에 있나?
- 비급여 치료가 이렇게 많은데 다 필요한 게 맞을까?
- 내가 다니던 병원은 산재의료기관이 아니라서, 승인 이후에는 병원을 옮겨야 한다고?
-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윤 중심의, 민간 중심의 의료 체계 문제

우리에게는
전략이
필요하다

어디서부터 바꿔 나갈까?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시작할 지점을 결정할 근거는 무엇일까?
문제의 시급성, 사회적 정당성, 조직화 가능성?
실현 가능성, 단-중-장기적 계획?

산재보험 개선 과제가 맞을까?

이쯤 되면 통째로 뜯어 고치는 게 맞지 않을까?
통째로 고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통째로 고치기 위한 동력은 어디서 나올까?

개별적, 분산적 대안을 넘어

개별적, 분산적 정책 대안 제시를 넘어
공동의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나갈 수 있을까?
'노안부'를 넘어서 노동운동의 과제가 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